

일본

문화청, 문화예술 분야의
적정한 계약관계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공개

권 용 수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문화청은 문화예술을 뒷받침하는 예술가 등이 공연주최자 등과의 관계에서 적정한 계약을 체결해 불이익을 입지 않게 하려고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여러 차례를 논의 끝에 '문화예술 분야의 적정한 계약관계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책정·공개함

가이드라인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의 계약상과 제와 개선 방향, 거래의 적정화 촉진 등의 관점에서 계약 시 명확히 해야 할 사항,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1. 배경

문화예술을 뒷받침하는 예술가 등(수주자)은 공연주최자 등(발주자)이 사전에 업무 내용, 보수와 그 지급 시기 등을 충분히 알려 주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각보다 불리한 조건 아래 업무에 종사하는 예가 많음

-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에는 계약서 등이 없어 보수 금액이나 활동 기회 감소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해 정부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함

문화청은 위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문화예술 분야의 적정한 계약관계 구축을 위한 검토회의(文化芸術分野の適正な契約関係構築に向けた検討会議)'를 개최하고, 여러 차례의 논의 끝에 가이드라인¹⁾을 책정·공개함

- 가이드라인은 문화예술기본법 제16조의 예술가 중 개인으로 활동하는 예술가가 일방 당사자가 되어 사업자·문화예술단체로부터 의뢰받아 행하는 문화예술에 관한 업무 계약관계를 대상으로 함

2.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① 문화예술 분야의 계약상 과제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사업자 등과 예술가의 신뢰 관계나 종래 관습 등으로 인해 구두 계약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예가 많고, 계약의 서면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분야, 직종, 안전에 따라 업무 내용이나 계약 기간이 다른 등 계약의 내용이 다양하고, 계약서 작성에 관계된 사무 부담이 큼

업무 내용이 창작 과정에서 바뀌는 예도 있고, 계약 시에 업무 내용이나 업무량을 정확하게 예상하기가 어려워 모호한 내용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계약서가 있어도 예술가의 보수나 저작권 등 권리가 적절히 보호되지 않거나 합리적 범위를 초월한 의무가 요구되는 등 예술가가 불이익을 입거나 분쟁으로 발전하는 예가 있음

② 상기 ①의 과제를 토대로 한 개선 방향

- 계약 내용의 명확화를 위한 계약의 서면화 추진
- 계약의 서면화 추진 시에는 각 분야나 업계 등의 실정에 따른 이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1) 가이드라인의 정식 명칭은 '문화예술 분야의 적정한 계약관계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文化芸術分野の適正な契約関係構築に向けたガイドライン)'임

COPYRIGHT
TREND

가이드라인은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이나 거래 적정화 관점에서의 기본적 항목을 도출·제시함으로써 실효적 활용을 기대하고 있음

- 계약의 서면화는 계약서, 확인서, 발주서, 메일이나 SNS 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핵심은 기록으로 남기는 것임
- 거래의 적정화 촉진
 - 예술가 등이 사업자와 보수나 거래 조건을 협의·교섭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함
 - 거래의 적정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나 제공하는 서비스에 걸맞은 보수 책정 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③ 거래의 적정화 촉진 등의 관점에서 계약 시에 명확히 해야 할 사항 등

- 업무 내용
 - 구체적인 업무나 기간 등은 되도록 명확히 기재하고, 이것이 어려운 경우는 그 이유나 예정 기일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함
- 보수 등
 - 보수 등은 업무 내용이나 전문성 등에 걸맞은 적절한 금액이 되도록 쌍방이 충분히 협의해 정하고, 경비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중지·연기
 - 계약 단계에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하고, 사후 협의 시에는 업무 이행 비율 등을 고려해 결정함
- 안전·위생
 - 발주자는 수주자의 안전에 배려하고, 사고·감질 방지를 위한 책임 체제를 확립해야 함
- 권리
 - 허락 시 이용범위나 양도 범위 등의 취급을 명확히 정하고, 대가 결정 시에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
- 내용 변경
 - 변경 내용도 서면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변경으로 인한 부담 증감 등을 고려해 보수 등을 변경하는 것도 필요함

가이드라인에서는 위의 기본 항목 외에 광고, 성명 표시, 손해배상책임, 계약종료 후 조치, 비밀 유지 등, 중도 해약, 분쟁 해결에 관한 조항 등 발주자와 계약시 유의점을 정리함

④ 적절한 계약관계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실효성 확보 방안

민관이 하나가 되어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적절한 계약관계 구축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정부에서는 연수회 실시나 상담 창구 설치를 비롯해 장기적 대처·지원을 추진하는 것, 기존의 각종 법령에 반하는 사실이 확인한 때 각 행정기관에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COPYRIGHT
TREND

발주자(사업자·업계단체) 측에서도 자율규제 제정이나 적절한 계약관계 구축을 상정한 환경 정비에 힘을 필요가 있고, 예술가 측에서도 지식을 쌓고 협의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필요함

3. 기대 효과

가이드라인은 문화예술 분야 계약의 과제와 개선 방향, 계약서 작성 해설,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문화예술 분야의 적절한 계약관계 구축, 나아가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활동 실현 도모를 목적으로 함

가이드라인은 모든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이나 거래 적정화 관점에서 기본적인 항목을 도출해 제시하고 있으며, 실무에서 이를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음

| 참고자료 |

-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kondankaito/bunka_geijyutu_bunya/index.html
-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kondankaito/bunka_geijyutu_bunya/pdf/93742601_01.pdf